

KMDIA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(개정판)

(사)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('20.08.04 기준)

1. 목적 :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학술대회 대면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※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, 행사를 자제하고 부득이 진행되는 경우, 온라인 행사로 개최하도록 권고(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-3342호, 5.28)

2. 적용기간 : 2020년 7월 1일 ~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

3. 관련규정

1) 공정경쟁규약 제8조 (학술대회 개최·운영 지원)

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·단체가 주관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을 기부, 식음료 제공, 기념품 제공, 부스 임대,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료법」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,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및 이들 협회가 승인·인정한 학회(해외학회 포함), 학술기관·단체 또는 연구기관·단체

2.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인정한 학회(해외학회 포함), 학술기관·단체 또는 연구기관·단체

2) 공정경쟁규약 제17조 (전시·광고) 및 세부운영기준 제13조 (전시·광고) 등

4. 지원대상

1)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

※ 단일 심포지엄, 전공의 교육, 연수강좌 등 제외

※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'산하단체' 또는 '지회'를 비롯해 '개별 의료기관'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2) 「의료법」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,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및 이들 협회가 승인·인정한 학회(해외학회 포함), 학술기관·단체 또는 연구기관·단체

3)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인정한 학회(해외학회 포함), 학술기관·단체 또는 연구기관·단체

5. 지원내용(지원단체 대상)

1)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: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

- 신청기간 : 학술대회 개최 전 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·운영지원 신청, 승인된 심의내용에 따라 진행

※ 단,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 시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, 재심의 신청 요망

2)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: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

※ 외국인 참가자 인정 : 내한 → 온라인 참석 가능 (공정위·복지부 유권해석)

3) 광고 및 부스 (온라인 국내·국제학술대회 공통) 지원 기준

구분		광고 (인쇄, 영상, 배너 등)	전시 (부스)
관련 규약		공정경쟁규약 17조(전시·광고), 세부운용기준 13조(전시·광고)	
예시	온라인	- 강의 영상, 학술대회 전용 사이트에 삽입된 배너 또는 영상 형태의 제작물 - 학술대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는 초록집 등 전자문서 등	- 온라인상에서 기업·제품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준하는 역할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여 수행
	오프라인	초록집, 교육자료 등 인쇄물	- 학술대회 현장에서 구조물을 설치하여 제품의 전시, 홍보, 상담을 통해 상세 정보제공 및 방문의 확인 등을 수행
금액 제한		최대 200만원(세금제외)	최대 200만원(세금제외)
유의사항	주최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 회사 수 : 최대 40개사 - 광고·부스의 합산 개수 : 최대 60개 * 예외사항 : 초록집 광고 숫자는 위의 수량에 합산하지 않음 - 온·오프라인 병행의 경우 온라인 광고·부스 지원 기준을 적용 - 시행일 이후 온·오프라인 병행의 경우 온라인 광고·부스 기준에 적용되며, 추후,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 시에도 온라인 기준을 적용 · 예시 - 오프라인 부스 : 1건 최대 200만원 / 오프라인 광고 : 1건 최대 200만원 	
	지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당 광고(최대 200만원) & 부스(최대 200만원) 각 1건씩 지원 가능 - 회사당 광고 2개 또는 부스 2개 지원 불가 - 한 회사는 규약 제8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, 운영지원 기부금과 제17조의 광고·부스비를 중복하여 지원 불가 ※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 	
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고·부스비의 책정은 규약의 형태별 금액 한도를 준수 ※ 규약의 광고 금액 한도 기준(세금제외) · 예시 - 웹사이트 광고 : 월 100만원 / 전자문서 : 70만원 / 인쇄물(학회 기준) : 표1,4 200만원, 표2 150만원, 표3 100만원 	

※ 본 기준에 따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가 온·오프 병행 또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경우, 초록집 광고에 한해 지원 가능